



## 시간선택제 전환관리규정(예시)



본 규정은 예시이며 기업별로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관리규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예시)

#### ■ 제1조(정의)

'시간선택제 전환'이란 육아, 가족 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 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 ■ 제2조(전환 신청)

- ① 재직기간이 〇〇개월 이상인 전일제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미취학 자녀 양육 또는 학령기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간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퇴직준비를 위해 희망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시간선택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신청 희망일로부터 최소 〇개월 전까지 신청서와 전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3조(전환승인)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환을 허용한다.

#### ■ 제4조(전환형 시간선택제 적용기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의 적용기간은 최소 〇개월 이상 최대 〇〇개월 미만으로 하되 필요 시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시간)

- ① 시간선택제 전환 후 근로시간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해당 부서장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업무량 변동 등 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전일제 근로의 복귀)

- ①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전일제 근로 복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1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다만, 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복귀됨을 원칙으로 한다.
  - 1.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 만료
  - 2.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 소멸
  - 3. 기타 사정에 의해 전일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 ②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 시 전환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한다

■ 제7조(임금 등)

- ① 시간선택제 전환 후 임금은 전환 전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반영하여 매월 〇〇만원의 수당을 별도 지급한다.
- ② 기타 세부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인사 및 복무규정의 적용)

- ①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인사 및 복무에 대한 사항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
- ② 전 항과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복리후생은 분할 가능한 급전직 급부인 경우에는 전일제 근로자 대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분할할 수 없는 기타 급부는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 제9조(인사평가의 적용)

- ①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인사평가는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타 인사평가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0조(경력기간 산정)

- ①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에 산입하며, 1일 이하로 산출된 기간은 1일로 산정한다.
- ③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인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부터 시행한다.